|  |  |  |
| --- | --- | --- |
|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24호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이 2019년 12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2019년 제18차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샤오야칭(肖亞慶)  2020년 1월 2일  **제1장 총칙**   1. 식품•식품첨가제 생산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의 신청•접수•심사•결정 및 그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1. 식품생산허가는 법에 의거하여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대중의 편리 도모, 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2. 식품생산허가는 1기업 1증서 원칙을 시행한다. 즉, 동일 식품생산자는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1개의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리스크 크기에 따라 식품원료•생산공법 등 요소와 결부시켜 식품생산을 분류하여 허가를 실시한다.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유형 및 식품안전 리스크에 근거하여 시(市)•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식품생산허가 관리 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보조식품, 식염 등 식품의 생산허가는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담당한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 심사통칙 및 세칙을 제정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생산허가 심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지방특색식품에 대한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식품생산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경우 지방특색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생산허가 심사통칙 및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하고 허가신청, 접수, 심사, 증서 발급, 조회 등 전체 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생산허가 사항을 공개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1.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영업집조 등 합법적 주체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個體工商戶), 농민전문합작조직 등은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1. 식품생산허가 신청은 다음의 식품유형 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식량가공품, 식용유, 유지(油脂) 및 그 제품 , 조미료, 육제품, 유제품, 음료수,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 음료수, 급속냉동식품, 마(薯)류 및 팽화식품, 사탕제품, 차엽(茶葉) 및 관련 제품, 주(酒)류, 채소제품, 과일제품, 볶은 견과종실류 식품 및 견과제품, 알제품, 코코아 및 구운 커피제품, 설탕,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제품, 케이크•떡, 콩제품, 꿀벌제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식단 식품, 기타 식품 등.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식품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식품생산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종•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와 식품 가공•포장•저장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유독•유해시설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종•수량과 어울리는 생산설비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환기, 방부(防腐), 방진(防塵), 파리 방지, 쥐 방지, 방충, 세척, 폐수 처리, 쓰레기•페기물 보관 설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공법에 원료 추출, 순화 등 전처리 절차가 포함된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품종•수량과 어울리는 원료 전처리 설비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전담 또는 겸임 형태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설비 분포와 공법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가공대기식품과 직접적으로 식용하는 식품, 원료와 완성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식품과 유독물질•불결물질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7. 식품생산허가 신청 시 신청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품생산허가 신청서 9. 식품생산설비 분포도와 식품생산 공법절차도 10.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시설 리스트 11. 전담 또는 겸임 형태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의 정보와 식품안전 관리제도 12.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식품의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과 어울리는 생산품질관리체계 서류와 관련 등록•비안(備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 시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어울리는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식품안전 관리인력, 전문 기술인력 및 관리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 시 신청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서 3. 식품첨가제 생산설비 분포도와 생산공법 절차도 4. 식품첨가제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시설 리스트 5. 전담 또는 겸임 형태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인력, 식품안전 관리인력의 정보와 식품안전 관리제도 6.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고 진실된 상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신청서 등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이 2개 유형 이상 식품의 생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확정한 식품생산허가 관리 권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접수부서를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접수부서는 지체없이 해당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고지하고 연합심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8. 현(縣)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식품생산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항일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거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10.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접수거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신청사항이 유관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1. 신청서류에 즉석 정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즉석 정정을 허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정일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12.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의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수취하고 신청서류 수취 증빙을 발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 수취일에 접수된 것으로 한다. 13.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法定)의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식품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4.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접수 결정을 내린 경우 접수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접수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접수거부통보서를 발행하여 접수거부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및 결정**   1.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상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청서류에 따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 최초 신청 또는 식품유형 추가 또는 허가 변경의 경우 식품생산 공법절차 등 요구에 근거하여 식품 시제품 검사보고서를 확인한다.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첨가제의 품종•특성에 근거하여 식품첨가제 시제품 검사보고서와 혼합식 식품첨가제의 배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시제품 검사는 생산자가 스스로 진행하거나 관련 자격을 구비한 식품검사기구에 의뢰할 수도 있다.  현장조사는 식품안전감독관리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에 따라 전문 기술자 또는 현장조사요원을 초빙하여 현장조사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장조사요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한다. 현장조사요원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식품생산허가현장조사표 및 현장조사기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거친 후 현장조사요원과 신청인이 현장조사표 및 현장조사기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현장조사요원은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젝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생산허가 신청의 경우 제품 등록 또는 제품 배합식 등록 절차에서 이미 현장조사가 이뤄진 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접수한 식품생산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특수 식품 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장조사요원은 현장조사 임무를 맡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생산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행정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5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경우 기간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허가 거부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신청인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식품첨가제생산허가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가 표시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4. 식품생산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5년이다. 5.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신청이 공공이익의 중대한 사항과 연관되어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생산허가가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관계와 연관되었을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해관계자에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해관계자가 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청문회 실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허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장 허가증 관리**   1. 식품생산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식품생산허가증의 양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증의 인쇄제작 및 발급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 식품생산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생산자의 명칭, 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책임자), 주소지, 생산지 주소, 식품유형, 허가증 번호, 유효기간, 증서 발급기관, 증서 발급일자 및 QR코드.   부본에는 식품 명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 배합식의 등록번호 또는 비안(備案)등기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지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SC(‘生産’의 한자 병음 자모의 줄임)와 14자리의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숫자는 왼쪾에서 오른쪽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 3자리의 식품유형 번호, 2자리의 성(자치구•직할시) 번호, 2자리의 시(지역) 번호, 2자리의 현(구) 번호, 4자리의 순서번호, 1자리의 인증번호. 2. 식품생산자는 식품생산허가증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자는 생산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생산허가증 정본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여야 한다.  **제5장 변경, 갱신 및 말소**   1.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식품생산자의 명칭, 기존 설비 분포와 공법절차, 주요 생산설비•시설, 식품유형 등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화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생산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유형 내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화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생산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 요구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수속의 재이행이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품생산허가 변경 신청서 3. 식품생산허가 변경 사항과 관련된 기타 서류 4.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식품생산자는 해당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식품생산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식품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식품생산허가 갱신 신청서 7. 식품생산허가 갱신 사항과 관련된 기타 서류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업체가 식품생산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품질관리체계 운영 상황에 대한 자사검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피허가인의 갱신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변경•갱신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신청인의 성명이 있을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생산조건과 주변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화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비안(備案)한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공법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록 변경 또는 비안(備案) 변경 수속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발급일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변경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 하며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생산장소 이전 등 원인으로 전면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진 경우 신규로 발급받은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중대한 변화로 국가시자감독관리총국 및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라 확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식품생산허가증을 교체발급하는 경우 재승인일을 그 발급일로 하며 유효기간은 재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갱신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효기간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갱신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기산한다.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갱신의 승인을 거부하는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종료하거나 식품생산허가를 철회•취소당한 경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말소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의 말소를 신청하는 식품생산자는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식품생산허가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가 말소된 경우 해당 허가증 번호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식품생산자가 규정을 어기고 말소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하고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식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식품생산자의 주체자격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 4. 식품생산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철회•취소되었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식품생산허가 사항의 실시 불능이 초래된 경우 6.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응당히 식품생산허가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7. 식품생산허가증의 변경, 갱신 및 말소 관련 절차는 이 방법 제2장,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독검사**   1.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민•법인과 기타 사회조직이 조회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과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발급, 허가사항 검사, 일상 감독검사, 허가 위법행위 조사처리 등 상황을 식품생산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식품생산자에 대하여서는 감독검사의 빈도와 횟수를 늘려야 한다.   1.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그 업무인원은 식품생산허가 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각적으로 식품생산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업무인원이 식품생산허가 관리 과정에서 행한 위법행위를 제보를 받은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허가 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생산허가 관련 서류, 증서 발급 상황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전국의 식품생산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생산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 현장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상업비밀, 미공개 정보 또는 비밀로 유지 중인 비지니스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가안보, 중대 사회공공이익과 연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장 법률책임**   1.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식품생산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식품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허가신청인이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 내에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2. 피허가인이 기만,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피허가인은 3년 내에 식품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3.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 양도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생산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생산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준다.   1.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식품생산자의 명칭, 기존 설비 분포와 공법절차, 주요 생산설비•시설 등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방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생산장소가 이전된 상황에서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고 식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 제32조 제3항,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에 기재된 동일 식품유형 내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을 종료하거나 식품생산허가를 철회•취소당하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을 취소당한 후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1. 식품생산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행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업체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적으로 담당한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벌을 내린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소당한 식품생산자와 그 법정대표인, 직접적으로 담당한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식품생산경영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에서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할 수 없다.   1.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의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법정(法定)의 직권 범위를 벗어나 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1.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한 요식업자가 그의 접객시설 내에서 식품을 가공함에 있어 이 방법에 규정된 식품생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2. 식품첨가제생산허가 관리의 원칙, 절차, 감독검사와 법률책임은 이 방법의 식품생산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3.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소형 수공업공장(小作坊)에 대한 감독관리는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4.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식품생산허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5.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작한 식품생산허가 전자증서는 인쇄제작한 식품생산허가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6. 이 방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原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2015년 8월 31일에 공포하고 2017년 11월 7일 原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된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24号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已于2019年12月23日经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19年第18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3月1日起施行。                            局长 肖亚庆          2020年1月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食品、食品添加剂生产许可活动，加强食品生产监督管理，保障食品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食品生产活动，应当依法取得食品生产许可。  食品生产许可的申请、受理、审查、决定及其监督检查，适用本办法。  **第三条** 食品生产许可应当遵循依法、公开、公平、公正、便民、高效的原则。  **第四条** 食品生产许可实行一企一证原则，即同一个食品生产者从事食品生产活动，应当取得一个食品生产许可证。  **第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按照食品的风险程度，结合食品原料、生产工艺等因素，对食品生产实施分类许可。  **第六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监督指导全国食品生产许可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食品生产许可监督管理工作。  **第七条** 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食品类别和食品安全风险状况，确定市、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的食品生产许可管理权限。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婴幼儿辅助食品、食盐等食品的生产许可，由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  **第八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制定食品生产许可审查通则和细则。  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食品生产许可审查工作的需要，对地方特色食品制定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在本行政区域内实施，并向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报告。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制定公布相关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后，地方特色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自行废止。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实施食品生产许可审查，应当遵守食品生产许可审查通则和细则。  **第九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加快信息化建设，推进许可申请、受理、审查、发证、查询等全流程网上办理，并在行政机关的网站上公布生产许可事项，提高办事效率。    **第二章 申请与受理**  **第十条** 申请食品生产许可，应当先行取得营业执照等合法主体资格。  企业法人、合伙企业、个人独资企业、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组织等，以营业执照载明的主体作为申请人。  **第十一条** 申请食品生产许可，应当按照以下食品类别提出：粮食加工品，食用油、油脂及其制品，调味品，肉制品，乳制品，饮料，方便食品，饼干，罐头，冷冻饮品，速冻食品，薯类和膨化食品，糖果制品，茶叶及相关制品，酒类，蔬菜制品，水果制品，炒货食品及坚果制品，蛋制品，可可及焙烤咖啡产品，食糖，水产制品，淀粉及淀粉制品，糕点，豆制品，蜂产品，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特殊膳食食品，其他食品等。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可以根据监督管理工作需要对食品类别进行调整。  **第十二条** 申请食品生产许可，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与生产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食品原料处理和食品加工、包装、贮存等场所，保持该场所环境整洁，并与有毒、有害场所以及其他污染源保持规定的距离；  （二）具有与生产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生产设备或者设施，有相应的消毒、更衣、盥洗、采光、照明、通风、防腐、防尘、防蝇、防鼠、防虫、洗涤以及处理废水、存放垃圾和废弃物的设备或者设施；保健食品生产工艺有原料提取、纯化等前处理工序的，需要具备与生产的品种、数量相适应的原料前处理设备或者设施；  （三）有专职或者兼职的食品安全专业技术人员、食品安全管理人员和保证食品安全的规章制度；  （四）具有合理的设备布局和工艺流程，防止待加工食品与直接入口食品、原料与成品交叉污染，避免食品接触有毒物、不洁物；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十三条** 申请食品生产许可，应当向申请人所在地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食品生产许可申请书；  （二）食品生产设备布局图和食品生产工艺流程图；  （三）食品生产主要设备、设施清单；  （四）专职或者兼职的食品安全专业技术人员、食品安全管理人员信息和食品安全管理制度。  **第十四条** 申请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等特殊食品的生产许可，还应当提交与所生产食品相适应的生产质量管理体系文件以及相关注册和备案文件。  **第十五条** 从事食品添加剂生产活动，应当依法取得食品添加剂生产许可。  申请食品添加剂生产许可，应当具备与所生产食品添加剂品种相适应的场所、生产设备或者设施、食品安全管理人员、专业技术人员和管理制度。  **第十六条** 申请食品添加剂生产许可，应当向申请人所在地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食品添加剂生产许可申请书；  （二）食品添加剂生产设备布局图和生产工艺流程图；  （三）食品添加剂生产主要设备、设施清单；  （四）专职或者兼职的食品安全专业技术人员、食品安全管理人员信息和食品安全管理制度。  **第十七条** 申请人应当如实向市场监督管理部门提交有关材料和反映真实情况，对申请材料的真实性负责，并在申请书等材料上签名或者盖章。  **第十八条** 申请人申请生产多个类别食品的，由申请人按照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确定的食品生产许可管理权限，自主选择其中一个受理部门提交申请材料。受理部门应当及时告知有相应审批权限的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联合审查。  **第十九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对申请人提出的食品生产许可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食品生产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请人不受理；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市场监督管理部门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机关申请；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由申请人在更正处签名或者盖章，注明更正日期；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5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当场告知的，应当将申请材料退回申请人；在5个工作日内告知的，应当收取申请材料并出具收到申请材料的凭据。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五）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材料的，应当受理食品生产许可申请。  **第二十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对申请人提出的申请决定予以受理的，应当出具受理通知书；决定不予受理的，应当出具不予受理通知书，说明不予受理的理由，并告知申请人依法享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三章 审查与决定**  **第二十一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进行审查。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的，应当进行现场核查。  市场监督管理部门开展食品生产许可现场核查时，应当按照申请材料进行核查。对首次申请许可或者增加食品类别的变更许可的，根据食品生产工艺流程等要求，核查试制食品的检验报告。开展食品添加剂生产许可现场核查时，可以根据食品添加剂品种特点，核查试制食品添加剂的检验报告和复配食品添加剂配方等。试制食品检验可以由生产者自行检验，或者委托有资质的食品检验机构检验。  现场核查应当由食品安全监管人员进行，根据需要可以聘请专业技术人员作为核查人员参加现场核查。核查人员不得少于2人。核查人员应当出示有效证件，填写食品生产许可现场核查表，制作现场核查记录，经申请人核对无误后，由核查人员和申请人在核查表和记录上签名或者盖章。申请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核查人员应当注明情况。  申请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乳粉生产许可，在产品注册或者产品配方注册时经过现场核查的项目，可以不再重复进行现场核查。  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委托下级市场监督管理部门，对受理的食品生产许可申请进行现场核查。特殊食品生产许可的现场核查原则上不得委托下级市场监督管理部门实施。  核查人员应当自接受现场核查任务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对生产场所的现场核查。  **第二十二条** 除可以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的外，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行政许可的决定。因特殊原因需要延长期限的，经本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5个工作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  **第二十三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申请材料审查和现场核查等情况，对符合条件的，作出准予生产许可的决定，并自作出决定之日起5个工作日内向申请人颁发食品生产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及时作出不予许可的书面决定并说明理由，同时告知申请人依法享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二十四条** 食品添加剂生产许可申请符合条件的，由申请人所在地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颁发食品生产许可证，并标注食品添加剂。  **第二十五条** 食品生产许可证发证日期为许可决定作出的日期，有效期为5年。  **第二十六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认为食品生产许可申请涉及公共利益的重大事项，需要听证的，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  **第二十七条** 食品生产许可直接涉及申请人与他人之间重大利益关系的，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在作出行政许可决定前，应当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享有要求听证的权利。  申请人、利害关系人在被告知听证权利之日起5个工作日内提出听证申请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20个工作日内组织听证。听证期限不计算在行政许可审查期限之内。    **第四章 许可证管理**  **第二十八条** 食品生产许可证分为正本、副本。正本、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制定食品生产许可证式样。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食品生产许可证的印制、发放等管理工作。  **第二十九条** 食品生产许可证应当载明：生产者名称、社会信用代码、法定代表人（负责人）、住所、生产地址、食品类别、许可证编号、有效期、发证机关、发证日期和二维码。  副本还应当载明食品明细。生产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的，还应当载明产品或者产品配方的注册号或者备案登记号；接受委托生产保健食品的，还应当载明委托企业名称及住所等相关信息。  **第三十条** 食品生产许可证编号由SC（“生产”的汉语拼音字母缩写）和14位阿拉伯数字组成。数字从左至右依次为：3位食品类别编码、2位省（自治区、直辖市）代码、2位市（地）代码、2位县（区）代码、4位顺序码、1位校验码。  **第三十一条** 食品生产者应当妥善保管食品生产许可证，不得伪造、涂改、倒卖、出租、出借、转让。  食品生产者应当在生产场所的显著位置悬挂或者摆放食品生产许可证正本。    **第五章 变更、延续与注销**  **第三十二条** 食品生产许可证有效期内，食品生产者名称、现有设备布局和工艺流程、主要生产设备设施、食品类别等事项发生变化，需要变更食品生产许可证载明的许可事项的，食品生产者应当在变化后10个工作日内向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提出变更申请。  食品生产者的生产场所迁址的，应当重新申请食品生产许可。  食品生产许可证副本载明的同一食品类别内的事项发生变化的，食品生产者应当在变化后10个工作日内向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报告。  食品生产者的生产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食品生产要求，需要重新办理许可手续的，应当依法办理。  **第三十三条** 申请变更食品生产许可的，应当提交下列申请材料：  （一）食品生产许可变更申请书；  （二）与变更食品生产许可事项有关的其他材料。  **第三十四条** 食品生产者需要延续依法取得的食品生产许可的有效期的，应当在该食品生产许可有效期届满30个工作日前，向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  **第三十五条** 食品生产者申请延续食品生产许可，应当提交下列材料：  （一）食品生产许可延续申请书；  （二）与延续食品生产许可事项有关的其他材料。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的生产企业申请延续食品生产许可的，还应当提供生产质量管理体系运行情况的自查报告。  **第三十六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被许可人的延续申请，在该食品生产许可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  **第三十七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对变更或者延续食品生产许可的申请材料进行审查，并按照本办法第二十一条的规定实施现场核查。  申请人声明生产条件未发生变化的，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不再进行现场核查。  申请人的生产条件及周边环境发生变化，可能影响食品安全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就变化情况进行现场核查。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注册或者备案的生产工艺发生变化的，应当先办理注册或者备案变更手续。  **第三十八条** 市场监督管理部门决定准予变更的，应当向申请人颁发新的食品生产许可证。食品生产许可证编号不变，发证日期为市场监督管理部门作出变更许可决定的日期，有效期与原证书一致。但是，对因迁址等原因而进行全面现场核查的，其换发的食品生产许可证有效期自发证之日起计算。  因食品安全国家标准发生重大变化，国家和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决定组织重新核查而换发的食品生产许可证，其发证日期以重新批准日期为准，有效期自重新发证之日起计算。  **第三十九条** 市场监督管理部门决定准予延续的，应当向申请人颁发新的食品生产许可证，许可证编号不变，有效期自市场监督管理部门作出延续许可决定之日起计算。  不符合许可条件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作出不予延续食品生产许可的书面决定，并说明理由。  **第四十条** 食品生产者终止食品生产，食品生产许可被撤回、撤销，应当在20个工作日内向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申请办理注销手续。  食品生产者申请注销食品生产许可的，应当向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提交食品生产许可注销申请书。  食品生产许可被注销的，许可证编号不得再次使用。  **第四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食品生产者未按规定申请办理注销手续的，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办理食品生产许可注销手续，并在网站进行公示：  （一）食品生产许可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的；  （二）食品生产者主体资格依法终止的；  （三）食品生产许可依法被撤回、撤销或者食品生产许可证依法被吊销的；  （四）因不可抗力导致食品生产许可事项无法实施的；   （五）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食品生产许可的其他情形。  **第四十二条** 食品生产许可证变更、延续与注销的有关程序参照本办法第二章、第三章的有关规定执行。    **第六章 监督检查**  **第四十三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依据法律法规规定的职责，对食品生产者的许可事项进行监督检查。  第四十四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食品许可管理信息平台，便于公民、法人和其他社会组织查询。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将食品生产许可颁发、许可事项检查、日常监督检查、许可违法行为查处等情况记入食品生产者食品安全信用档案，并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对有不良信用记录的食品生产者应当增加监督检查频次。  **第四十五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履行食品生产许可管理职责，应当自觉接受食品生产者和社会监督。  接到有关工作人员在食品生产许可管理过程中存在违法行为的举报，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进行调查核实。情况属实的，应当立即纠正。  **第四十六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食品生产许可档案管理制度，将办理食品生产许可的有关材料、发证情况及时归档。  **第四十七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可以定期或者不定期组织对全国食品生产许可工作进行监督检查；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定期或者不定期组织对本行政区域内的食品生产许可工作进行监督检查。  **第四十八条** 未经申请人同意，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参加现场核查的人员不得披露申请人提交的商业秘密、未披露信息或者保密商务信息，法律另有规定或者涉及国家安全、重大社会公共利益的除外。    **第七章 法律责任**  **第四十九条** 未取得食品生产许可从事食品生产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给予处罚。  食品生产者生产的食品不属于食品生产许可证上载明的食品类别的，视为未取得食品生产许可从事食品生产活动。  **第五十条** 许可申请人隐瞒真实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食品生产许可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申请人在1年内不得再次申请食品生产许可。  **第五十一条** 被许可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食品生产许可的，由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撤销许可，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被许可人在3年内不得再次申请食品生产许可。  **第五十二条** 违反本办法第三十一条第一款规定，食品生产者伪造、涂改、倒卖、出租、出借、转让食品生产许可证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违反本办法第三十一条第二款规定，食品生产者未按规定在生产场所的显著位置悬挂或者摆放食品生产许可证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警告。  **第五十三条** 违反本办法第三十二条第一款规定，食品生产许可证有效期内，食品生产者名称、现有设备布局和工艺流程、主要生产设备设施等事项发生变化，需要变更食品生产许可证载明的许可事项，未按规定申请变更的，由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违反本办法第三十二条第二款规定，食品生产者的生产场所迁址后未重新申请取得食品生产许可从事食品生产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给予处罚。  违反本办法第三十二条第三款、第四十条第一款规定，食品生产许可证副本载明的同一食品类别内的事项发生变化，食品生产者未按规定报告的，食品生产者终止食品生产，食品生产许可被撤回、撤销或者食品生产许可证被吊销，未按规定申请办理注销手续的，由原发证的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下罚款。  **第五十四条** 食品生产者违反本办法规定，有《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第七十五条第一款规定的情形的，依法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罚。  被吊销生产许可证的食品生产者及其法定代表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自处罚决定作出之日起5年内不得申请食品生产经营许可，或者从事食品生产经营管理工作、担任食品生产经营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  **第五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对不符合条件的申请人准予许可，或者超越法定职权准予许可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四条的规定给予处分。    **第八章 附 则**  **第五十六条** 取得食品经营许可的餐饮服务提供者在其餐饮服务场所制作加工食品，不需要取得本办法规定的食品生产许可。  **第五十七条** 食品添加剂的生产许可管理原则、程序、监督检查和法律责任，适用本办法有关食品生产许可的规定。  **第五十八条** 对食品生产加工小作坊的监督管理，按照省、自治区、直辖市制定的具体管理办法执行。  **第五十九条** 各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实际情况，制定有关食品生产许可管理的具体实施办法。  **第六十条** 市场监督管理部门制作的食品生产许可电子证书与印制的食品生产许可证书具有同等法律效力。  **第六十一条** 本办法自2020年3月1日起施行。原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2015年8月31日公布，根据2017年11月7日原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修正的《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同时废止。 |